

우대사항 및 제출서류

우대사항

구 분	대 상	가 점	인정기준	증빙 방법 (제출서류)
법률	취업 지원 대상자	동점자 처리기준상 우선순위 (가점없음)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「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「5·18민주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	-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스캔본 - '24. 3. 28. 이후 정부24 발급본만 인정
특별	장애인 (본인)	1차 전형 (면접) 만점의 10%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	-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 스캔본 - '24. 3. 28. 이후 정부24 발급본만 인정

【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별 가점부여 기준】

- 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단위 선발 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
* 세부내용은 국가보훈부 ‘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’ 제41조의 3에 따름
- ☐ 단, 동점자일 경우에는 선발 예정의 30%를 초과하여 합격 가능
- ☐ 선발단위(최소 모집단위)가 3인 이하인 경우 가점 미부여
* 단, 동점자 처리시 우선순위로 선정